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오중석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대, 김정태,
김제리, 박기열, 박기재,
박상구, 박순규, 봉양순,
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
유 용, 이성배, 이영실,
임만균, 임종국, 장상기,
전석기, 최웅식, 한기영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종전에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 위임하고 있었으나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0조 개정('21.7.9. 시행)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·지정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여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9조제4항 내지 제6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(이하 “업무대행 건축사”라 한다)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1.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
2.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, 세움터,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.

3.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업무대행건축사로 한다.

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기준,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) ① ~ ③ (생략) ④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 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 축사 명부를 작성한다.</p> <p>1. <신 설></p> <p>2. <신 설></p> <p>3. <신 설></p> <p>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</p>	<p>제19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 무의 대행) ① ~ ③ (생략) ④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 축사(이하 “업무대행 건축사”라 한다)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</p> <p>1.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를 작성 하기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공 개모집하여야 한다.</p> <p>2. 업무대행 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자치구의 인터 넷 홈페이지, 세움터, 관련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 건축사 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 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3.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격이 있는 자 중 시 에 소재지를 둔 업무대행 건축 사로 한다.</p> <p>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선발기준, 등록신청에 관</p>
<p>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</p>	<p>건축사 선발기준, 등록신청에 관</p>

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시 및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